

2023년 하반기 「장애인 창업 컨설팅」 지원 대상자 모집공고

장애인 예비/재기/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「장애인 창업 컨설팅」 지원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6월 2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

- ※ 본 모집공고는 장애인 창업 컨설팅 **지원을 받는 대상자** 모집공고입니다.
- ※ 2023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은 **상/하반기 2회** 운영됩니다. **상반기 컨설팅 미신청자에 한해 하반기 컨설팅 참여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**

1 모집개요

- 추진목적 : 장애인 예비/재기/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 지원
- 모집규모 : 총 100명 내외 * 상반기 포함 250명 이상의 수료생 배출 예정
- 모집대상 : 장애인 예비/재기/초기창업자

창업단계	정의
예비	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
재기	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재창업하려는 자
초기	사업 개시 3년 미만의 기창업자

- 모집기간 : 2023년 6월 21일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, 선착순마감

* 상반기 컨설팅 미신청자는 하반기 컨설팅 신청 가능

** 신청서류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나,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

2

신청자격

□ 지원대상

- (교육이수자)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*을 이수한 자
* 온라인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'23년 1월 1일 이후 수료자만 인정, 특화교육의 경우 '22년~'23년도 발급 수료증만 인정
-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*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
*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자
- (예비창업자)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,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한 경우 폐업일(폐업신고서의 접수일)로부터 모집 공고일 기준 30일 경과한 자
- (재기창업자) 기존 사업을 폐업/양도하고, 새로운 업종*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
- (초기창업자)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을 한 자로서, 사업자등록을 한지 3년 이내인 자 * 사업자등록일이 2020년 6월 20일 이후인 자에 해당

< 지원 제외 대상 >

- 비영리사업(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)
* 「상법」에 의한 회사로서 「소득세법」제168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(비영리 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센터 등)
-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(개인사업자·법인사업자 포함)
*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
- 단,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
-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(사금융, 사치 향락업종, 도박업, 부동산 및 임대업 등)
*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

3

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 : 2023년 6월 21일(수) ~ 예산 소진 시까지, 선착순마감

□ 신청방법 : 서류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및 팩스접수

- (접수처)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6층 창업지원부
교육담당자(정혜원 주임) 앞
- (이메일 / FAX) jhw@debc.or.kr / 02-2181-6555

□ 신청서류 : 아래 제출서류 일체 필수 발송 요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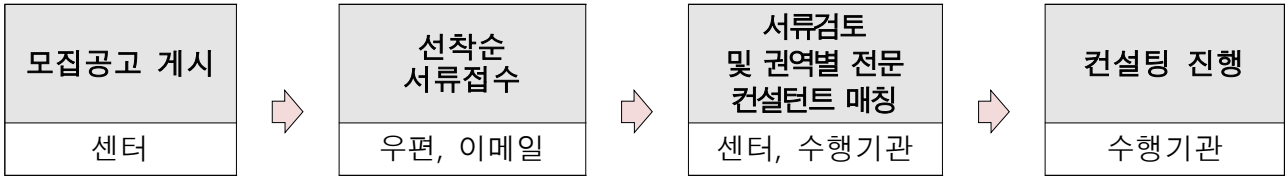
번호	제출서류	수량	비고
1	창업 컨설팅 지원신청서	1부	붙임1
2	개인(신용)정보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1부	붙임2
3	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	1부	정부24/관할 행정복지센터
4	온라인교육 수료증	1부	창업넷(붙임3 참조)
5	사업자등록증	1부	초기창업자 해당 시(정부24)
외부기관 발급서류(3, 5, 6번)는 모집공고 게재일(2023. 6. 21.) 이후 발급서류 제출 필수			

□ 신청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기관에서 부담함
-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(미제출 시 탈락 처리)
-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일부가 잘못되었거나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센터는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- 신청서류 이상이 발견된 경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

4 지원내용

□ 추진절차



□ 컨설팅 내용 : 창업단계(예비/재기, 초기)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

분야	항목	내용	횟수
사전 컨설팅 (예비/재기)	사업계획	•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아이템 사업화 • 사업계획서 고도화 및 창업지원사업 연계 안내	1인 최대 3회
	경영	• 마케팅, 홍보, 프랜차이즈, 인사·재무관리 경영전반	
	브랜드·디자인	•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전략	
	법률	• 법률, 특허, 세무, 노무 등	
	기술	• 특화교육과 연관된 상품 및 메뉴 개발, 노하우 전수 등	
	재기	• 사업정리, 실패원인 분석, 신규아이템 개발 등	
사후 컨설팅 (초기)	경영애로사항	• 사업화선정자 등 초기창업자 애로사항 청취 및 코칭 • 창업지원사업 연계 대상자 우수사례 발굴	1인 최대 2회

5 문의처

□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.debc.or.kr

□ 창업지원부 교육담당자 정혜원 주임 02-2181-6521

6 붙임서류

1. 창업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.
2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.
3. 창업넷(온라인 창업교육) 수강 안내 1부.